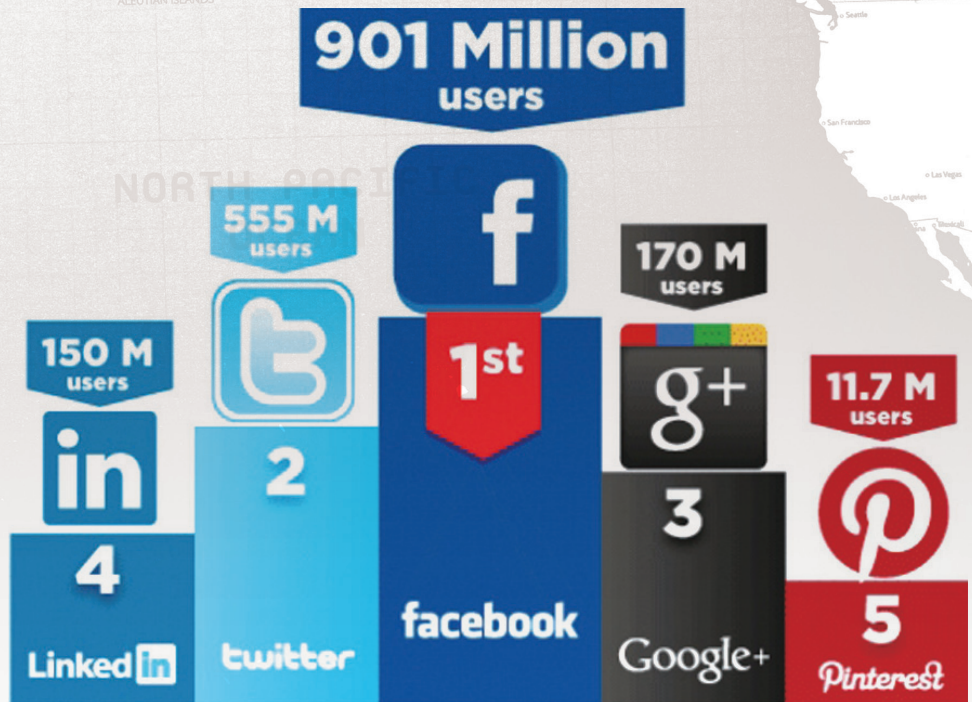




Number of Users on Popular Social Networking Sites



2011년, 영국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소동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시대적 자각을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소동과 함께 영국에서는 ‘슈퍼 인정선 (Super Injunction)’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슈퍼 인정선’, 굳이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사생활보호 금지명령’ 정도가 되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법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신청인은 주로 유명인사들이다. 법원

은 그들의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슈퍼 인정선 명령을 내린다.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신청인에 대한 사생활을 보도할 수 없다. 사실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미디어 때문이었다. SNS가 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법을 조롱하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2011년 5월 22일자 선데이헤럴드 1면

사건은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스타플레이어 라이언 킷스와 슈퍼모델 이모겐 토마스와 관련된 것이다. 킷스가 토마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킷스의 이름을 쓸 수는 없었다. 슈퍼 인정선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위터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슈퍼 인정선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트위터를 통해 세상이 다 알게 된 유명인사의 이름을 언론은 모른 척 ‘CTB’라는 이니셜로 처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영국의 법원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슈퍼 인정선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었다.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보도되고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드디어 메이저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2011년 5월 22일자 선데이헤럴드(Sunday Herald)가 1면에 킷스의 눈이 ‘검열(CENSORED)’이라는 검은 띠로 가려진 사진과 함께 ‘섹스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축구선수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선데이헤럴드는 스코틀랜드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영국이 일종의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은 선데이헤럴드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었다. 해당 법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지역에서의 보도, 그리고 국경 없이 날아다니는 트위터, 그 앞에 슈퍼 인정선은 무력했다. 킷스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영국 밖에서 더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마치 영국의 법원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SNS는 정보를 순식간에 ‘어찌 됐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만들어 버린다. 대부분의 SNS 사용자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따위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 손가락으로 내 기계에다가 뭐라고 쓰든 무슨 상관이야'는 식이다. 사실 그런 표현 욕구는 인간의 DNA 속에 늘 존재해 왔다. SNS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폭제였다. 인간의 표현 욕구는 법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표현 욕구가 SNS를 만났을 때 '통제'는 불가능에 가까워 질수도 있다. 라이언 깅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흔히 '소셜 미디어'라고도 한다. 깅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왜 '미디어'로 지칭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느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SNS는 가족 또는 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일정 수준의 책임이 수반되는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말이다. 이제 사람들이 각자 어떤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NS에 의해 사이버 세상으로 던져지는 정보들은 던져지는 순간 정보를 올리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기체처럼 스스로 작동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올린 사람의 통제권에서도 벗어난 상태로 말이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 그 중 트위터 이용자는 5억 5천만 명, 페이스북 이용자는 9억 명으로 올해 10억 명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다른 SNS 이용자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약 21%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는 지구촌 인구 5명 중 1명이 SNS 이용자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따위와는 거리가 먼 세대를 포함해 그런 신문명을 접할 수 없는 정글이나 사막,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촌'을 넘어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

수십억 인구가 SNS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늘 상존하던 문제들이 한층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 & 알 권리'로 대표되는 권리와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 명예훼손' 등으로 대표되는 권리가 상호 충돌하는 문제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내·외부적인 원칙과 규칙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매체로서 기능을 해왔고, 그로 인해 두 권리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SNS는 원칙과 규칙이 수백,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매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SNS의 '활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확장시켜주

는 반면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와 ‘명예훼손’의 위험은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상충되는 두 권리간의 충돌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2월, 트위터에 한 살인범, 존 베나블스의 사진이 올라왔다. 그의 사진은 곧 내려졌지만 이미 100명 이상이 퍼나르기(리트윗)를 한 상태였다. 1993년, 베나블스는 로버트 톰슨과 함께 두 살짜리 아이를 살해했다. 아동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2001년 석방됐지만 2010년 7월 아동음란물 습득 및 유포 죄로 다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다. 그런데 이번엔 법원이 그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가상세계를 떠돌게 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법정으로 불렀다. 이쯤에서 언뜻 살인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쏘아붙인 혐의는 다소 엉뚱하게도 ‘법정 모독죄’였다. 트위터에 살인자의 사진을, 그것도 범인으로 입증된 인물의 사진을 올린 것이 어떻게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러했다. 1993년, 살인을 저지른 당시 베나블스의 나이는 불과 10살이었다. 법원은 그가 어린 아이임을 감안해 극히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형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일체의 신상정보 노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석방과 함께 그는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받았

었다. 그런데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런 그의 사진을 트위터 상에 올려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였기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자사의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스나이트’를 통해 1980년대에 웨일즈의 한 어린이 집에서 발생했던 아동 성학대 문제를 보도하며, 성학대를 저지른 범인으로 한 정치인을 지목했다. 정확히 말하면 지목은 아니었다. 대략 누구일지 연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암시’였다. 이름을 밝히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위터에서 터졌다. 트위터를 통해 보수당 국회의원 맥 알파인의 이름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BBC는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은 쉽게 그의 이름을 떠올렸고 BBC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BBC는 알파인에게 18만 5천 파운드에 이르는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했다(알파인은 BBC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어린이 자선 프로젝트인 ‘BBC’s Children In Need’에 기부했다). 알파인은 그의 이름을 트위터에 올린 500여 명의 트위터 사용자와 리트윗을 한 국회의장의 아내 살리 버코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00명 중에는 유명 코미디언과 정통 일간지 가디언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그는 500명의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버코우에 대한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버코우의 트위터는 5만 6천 명의 팔로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인은 버코



보수당 국회의원 맥 알파인

우에게 5만 파운드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5월 영국 법원은 한 남자에게 385파운드의 벌금과 600파운드의 재판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인공은 폴 챔버스. 그가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이러했다. 영국 북부의 돈카스터에 거주하는 그는 출장을 가기 위해 인근 로빈후드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폭설이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도 나고 달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던 그는 “공항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농담을 트위터에 올렸다. 흔히 하듯 화김에 한 농담이었다. 그런데 영국 법원은 2003년 발효된 통신법상 ‘전자통신 위협’ 조항을 들어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는 즉시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벌금은 면했지만 화김에 내뿜은 농담 한 마디의 결과로는 가혹한 경험이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웨일즈의 축구선수 체드 에반스가 19세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2년 4월 영국 법원은 그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6천 건의 트윗을 발생시켰다. 문제는 그 중 피해여성의 이름을 밝힌 트윗 때문에 발생했다. 영국의 미디어 법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소셜 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런 법을 알 리 없었을 터, 그들은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은 냉정했다.

이번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을 법한 일이다. 축구선수 지동원이 활약했던 '선더랜드'의 팬인 29살 피터 코플랜드는 트위터에 상대 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선수를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올렸다. 연이어 흑인선수가 너무 많다는 글도 올렸다. 그의 포스팅에 60여 명이 댓글을 달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지역신문 기자가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코플랜드는 '인종차별적인 야비한 공격'이라는 죄명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경찰 당국은 2008년 이후 지난 4년간 SNS와 관련된 범죄 신고가 780%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 해에만 SNS 신고 건수는 4,908건이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653명이었다.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정도로 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이다. 신고 이유

는 협박, 괴롭힘, 스토킹, 성희롱, 사기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수단이 SNS였다. 영국 경찰협회 회장 앤디 트로터는 SNS가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고소, 고발의 남용에 대해 이렇게 경계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통을 할 권리가 있다. 다소 불쾌하고, 용인되기 어려운 표현이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가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칙을 정해 경찰의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CP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은 최근 SNS 신고의 남발을 억제하고, 경찰의 개입여부와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격성을 띄고 있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나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폭력적인 협박이 분명한 메시지를 올리거나, 법원이 금지한 정보를 올릴 때에는 기소될 수 있다. 퍼나르기(리트윗)도 처벌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즉시 글을 내리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올린 글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다. 글을 넓게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 또한 기소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글이 다양한 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

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엔 그들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만큼 기소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올해 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효될 것으로 알려진 개정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는 경찰이 요구할 경우 명예훼손적인 글을 삭제하고 글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예로 든 알파인 보수당 의원의 경우 버코우와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소송관광’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SNS와 신문 기사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전문가 루크 스칼론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트위터 사용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공인은 일반인을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증오, 조롱, 멸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를 끼치면 징역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법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퍼나르기(리트윗)도 마찬가지다.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글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의견 또한 그런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리트윗 되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올리지도, 전달하지도 않는 것이다.”

영국 로펌 위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영국 국민 46%는 증거 없이 루머를 퍼트릴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 관련 법사위원회 의장(Chairman of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s criminal law committee)인 이안 켈시는 이렇게 충고한다. “외치기 전에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라. 아니라면 외치지 마라.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신문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SNS는 미디어다. SNS는 시시콜콜한 개인 사나 생각도 때때로 온 세상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무한 확장’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SNS는 개인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법률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하겠다.